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베트남의 조세 사찰 관련에 기업들이 알고필요한 내용

2014년 11월 12 일



베트남의 조세 사찰 관련에 기업들이 알고필요한 내용

지난 시간동안 세무서는 날이갈수록 각 회사, 기업들에 대한 세무사찰(inspect)을 강화하면서 구체적 진행지도를 한다. 이런 조사는 넓은규모로 진행되고 세무에 관련된 문제점 있거나 높은Risk가능성및 여러해 동안 사찰을 받지못하고 계속 적자발생, 투자증설 혹은 소유형식의 변경, 그리고 협력측 하고 여러 거래 관계들이 있는 등의 회사들에 집중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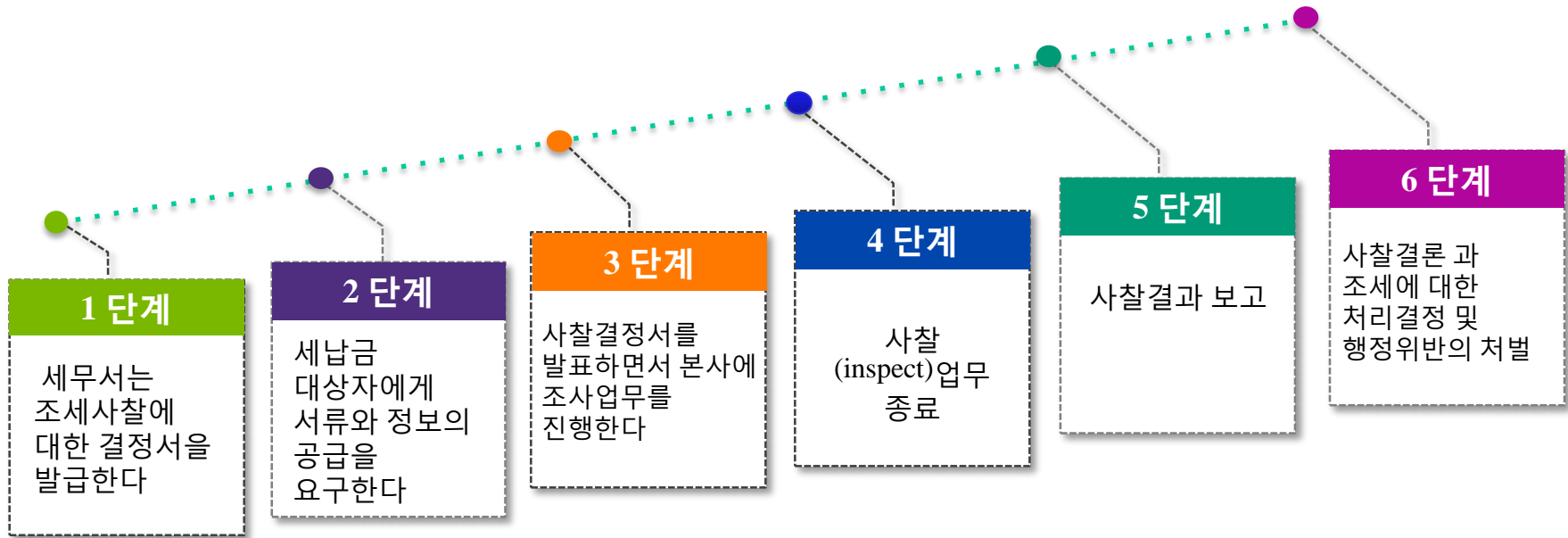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세국은 각종세무를 전체적 사찰하거나 중요 세종 항목에만, 아니면 개인소득세(PIT) 혹은 이전가격에만 집중 사찰한다.

우리들의 본 눈으로 일부회사는 미리 준비를 잘하고 전에 세무산책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찰 결과를 받을수가 있다. 일부 회사는 사찰전에 미리 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진행할때 많은 시간필요 및 세금수취, 환납조치 아니면 큰 벌금을 당하는 결과에 바진다. 그런일이 생기면 당사는 조세 법규를 잘 집행 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생산,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회사가치 와 Brand의 손해를 받는다.

이번 소식통으로 Grant Thornton (VietNam)은 각 회사들에 세무사찰 순서(sequence)와 절차(procedures) 의 기본 이해 및 국가 세금 의무 집행을 한때 Risk를 피할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한다.



회사의 본사에 세무사찰 순서 와 절차



회사의 본사에 세무사찰 순서 와 절차

1 단계: 세무서는 조세사찰에 대한 결정서를 발급한다

세무사찰결정서는 회사에 늦어도 03일내에 결정서 결재날부터 보내주어야 한다.

2 단계: 세납금 대상자에게 서류와 정보의 공급을 요구한다

사찰단은 회사의 본사에 사찰진행 하기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서류 와 정보 및 설명내용등 요구하는 권한 이 있다.

당사는 사찰시간연기를 (타당 이유보유 시) 요구할수가 있다.

국이 회사에 연기승유를 설명해주면서 시간연기 요구 문서를 받은 후 05일 내에 세인 아니면 연기 거절 통 보를 알려준다. 당사는 세무서의 사찰 결정 의 규정 시간을 3일내 집행하지 않거나 세무에 관련 된 서류당사는 문서를 세무서에 보내 사찰 시간 지연 , 전표, 장부,정보등의 공급요구 지연, 거절을 하면서 요구문서의 제출시간06일을 넘으면 당사가 행정 위반 처벌을 받게된다이.

당사는 사찰단에 공급해준 서류들이 다음 포함:

- 영업정관/투자허가서
- 재무부의 매출영수증 사용현황.
- 영수증보고,서류,전표,회계장부,감사된 재정보고서.
- 조세에 대한 계산서류.
- 당사의 납세의무에 관련된 서류등.

당사는 회계 SOFTWARE를 사용하면 그FILE도 공급해준다.

납세자는 세무사찰에 관련되지 않는 서류 와 정보들을 공급거절 할수도 있다.

회사의 본사에 세무사찰 순서 와 절차

3 단계: 사찰결정서를 발표하면서 본사에 조사업무를 진행한다

사찰결정서의 발급날부터 늦어도 15일내 사찰단 장은 산책된 회사에 사찰결정서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사에 세국의 세무 사찰을 진행한과정에 주의를 필요한 점:

세무사찰 기간:

세 사찰 결정서의 발급 공관	세 사찰 기간 (*)	
	보통의 경우	복잡한 경우
세국청(GDT)	근무일의45 일	근무의70 일
세무서, 지방세무지국	근무의30 일	근무의45 일

(*) 사찰기간은 사찰결정서발표일부터 사찰받은 장소에 업무완료일까지의 시간이다.필요한경우엔 확인및 증거모집을 더 시간필요 하면 사찰규정기간을 끝난 05일전부터 사찰단장이 사찰지도자에게 보고해드려 사찰연기를 사찰결정서발령 사람의 결정을 도 발급한다.

사찰시간의 연기를 오직 한번만 결정서형식으로 해결된다.

사찰결정서의 시간 과 연기결정시간의총은 복잡한 사찰건에 대한 규정시간과 넘치않는다.

세무 사찰과정중의 해명:

세무 사찰과정중 세무서는 다음업무를 할수 있음:

- 세 사찰결정서 내용중 당사의 자산통계를 한다.
- 당사의 담당자의 설명을 요구함, 설명이 말로 아니면 문서로 할수있다.
- 당사의 담당자나 대표법인의 회사의 납세의무를 증명해준 서류 와 정보설명을 녹음한다.
- 필요경우엔 당사의 서류를 회수검사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가져가서 검증할수 있다.

회사의 본사에 세무사찰 순서 와 절차

4 단계: 사찰 (inspect) 업무 종료

사찰확인서를 업무종료 날부터 05일내 양식대로 작성되고 같이 서명한다.

당사는 세무사찰확인서를 받고 그의 내용을 구체적설명을 조사단에 요구하고 확인서에 자기의 보류 의견을 반영 할수있다.

사찰을 끝나고 당사는 *세무사찰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확인서의 발표날부터 *늦어도 05일내* 사찰 단장이 행정위반확인서를 작성해서 사찰부서장에게 보고해서 사찰결정서 발령자를 통해 행정 위반 처리 결정을 내주면서 납세자를 사찰확인서에 서명요구를 한다.

당사는 그래도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 세무 확인서의 발표된 일 부터 최대 30일 이하에 세무서 장은 세금 수취처리결정 및 행정위반 처리를 하는 동시에 사찰확인서 내용처럼 세사찰결론을 한다.

5 단계: 사찰결과 보고

사찰업무를 끝난일 부터 늦어도 15일내에 사찰단장은 조사결과를 사찰부서장에게 보고해서 사찰결정서를 발령한 사람에 올려준다.

6 단계: 사찰결론 과 조세에 대한 처리결정 및 행정위반의 처벌

사찰결과 보고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내 사찰결정서 발령 사람이 사찰결론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사찰결론내용에 대한 공신력 기관 및 조직의 전문적 업무결론을 기다린 경우를 제외한다.



회사의 청구(Claim)권

회사,기업들은 세무서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다음 같은 청구 권한이 있다:

- 1.세금액의 지정(to define) 결정서.
- 2.납세 통보.
- 3.조세에대한 세법위반행위의 행정 처벌 결정서.
- 4.세무에 대한 행정적 결정서의 집행을 강제 결정서.
- 5.세무에 대한 사찰결론문서.
- 6.청구에 대한 해결 결정서.

회사들은 자기의 합법이익,권한침범 및 불법행위아닌 근거가 있을시 세무서의 행정 행위, 세금관리 담당자의 행위들에 대한 청구권한이 있다. 행정행위들은 행동 아니면 비행동으로 표현된다.

회사의 청구는 청구(Claim)법 No.02/2011/QH13의 내용을 참조할수가 있다.

각회사들은 세무사찰을 받을때에 당할수 있는 RISK

- Internet이나 신문지의 소식통에 행정위반에 대한 통보가 된다.
- 세무에 대한 행정벌금을 당한다. 예. 세금 잘못계산 혹은 세금 작성 List를 지연제출한다.
- 증가로 발현된 세금을 다 납세해야 한다.
- 납세지연의 벌금을 0,05% - 0,07%/하루의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23,75% - 25,55%/년).
- 부족된 세금의 어치를10% - 20%로 더 벌금 대린다.
- 탈세 및 세금 장남행위에 대한 금액의 1 내지3배로 벌금한다. 구체적 경우에 따라 회사 법인장이나 관련자(재정 부서장, 회계장, 회계담당자)등에게 형사조치를 할수가 있다.

세무사찰을 받을때 RISK 감소 조치

1. 정기적으로 세금계산 서류들을 검토하고 잘못을 발견된 경우엔 보충 계산 및 세금작성List를 조정한다. 보충계산신고는 세무서 의 세사찰결정서를 발급하기전에 진행해야 한다.
2. 당사 와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자들하고 거래상 시장가격의 확정에 대한 재무부의 결정서에 매년 의 시장가격증명서류를 Update해 준다.
3. 당사는 세무계산서류의 검토와 시장가격증명 혹은 세국과 설명할 필요한 경우엔 Grant Thornton VietNam의 전문적 조세담당자 하고 늘 업무상담을 하면서 협조를 받을수가 있다.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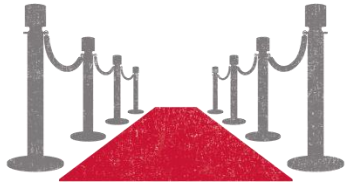
본 소식통의 정보들이 통보시점 전까지 효력이있는 조세법규 각종 문서부터 요약 하거나 종합한다. 우리GT Vietnam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관련 회사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 만 된다고 생각한다. Grant Thornton (VietNam) 은 본 소식통의 잘못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 손해를 입는데 책임 지지않다.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Grant Thornton (VietNam) 의 협조를 받으려면 저희들의 전문가들과하고 연락 및 합의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Mr. VINH의 번역본)

상기의 소식통내용등 download 를 하시려면 당사의 다음 Web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www.gt.com.vn



Hanoi Office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Pham Vinh

Consultant– Korean Desk
D +84 4 3850 1686
E Vinh.Pham@vn.gt.com

Pham Ngoc Long

Tax Director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Kieu Hoai Nam

Tax Senior Manager
D +84 4 3850 1681
E Nam.Kieu@vn.gt.com

Ho Chi Minh Office

28th Floor,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8 3910 9100
F + 84 8 3914 3748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Senior Manager
M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en Bao Thai

Tax Senior Manager
M +84 8 3910 9236
E Thai.Nguyen@vn.gt.com

Questions & feedback

